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72

2024. 12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8일

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최병희)

가. 제안사유

○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
- 4,828명 → 4,832명(+4)

▸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(+4)

※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

❍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3)

- 총　계: 4,828명 → 4,832명(+4)
- 일반직: 1,698명→1,699명(+1) ▸ 5급 이하(+1)
- 연구직: 197명→195명(△2) ▸ 연구관(+1), 연구사(△3)
- 지도직: 30명→31명(+1) ▸ 지도사(+1)
- 소방직: 2,845명(변동없음) ▸ 소방정(+1), 소방령이하(△1)
- 경찰직: 4명(+4) ▸ 경감(+4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❍ 본 조례안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충청북도 공무원의 정원에 반영하고,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❍ 안 제2조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이 4명 증원됨에 따라, 이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
- 「소방기본법」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(법률 제20156호, 2024. 1. 30., 일부개정),
- 이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의 제명을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면서,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정하였으며,
-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[별표 2] 시·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표에서 충청북도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경감 4명으

로 정하였는바, 특별한 이견 없음.

○ 안 별표3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(2024. 11. 15. 제출, 의안번호 제771호 조례안) 개정을 통해 조정되는 기구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, 특별한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4,828명”을 “4,83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: 4명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---------- -------.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,828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**제2조(정원의 총수)** ---------- ---------- 4,832명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의2.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: 4명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/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**4,832**	-					
정무직 계	**3**	1					2
도지사	1	1					
위원장	1						1
상임위원	1						1
일반직 계	**1,699**	-					
1~2급	1					1	
2~3급	2	1	1				
3급	12	10		1		1	
3~4급	2	2					
4급	81	56	8	4	7	5	1
5급이하 소계	1,585	-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	-					
별정직 계	**12**	-					
1급 상당	1	1					
4급 상당	3	3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-					
연구직 계	**195**	-					
연구관	32			32			
연구사	163	-					
지도직 계	**31**	-					
지도관	6			6			
지도사	25	-					
소방직 계	**2,845**	-					
소방정	19	6		13			
소방령이하	2,826	-					
경찰직 계	**4**	-					
경감	4	4					
교육공무원 계	**43**	-					
총장	1			1			
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전임강사	31			31			
조교	11	-	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